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효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14.

발 의 자 : 강효상 · 곽대훈 · 곽상도
김광림 · 김상훈 · 김선동
김성찬 · 김정재 · 박순자
심재철 · 여상규 · 이은재
이장우 · 정양석 · 정용기
정종섭 · 주호영 · 최연혜
한선교 · 이언주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
상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2
년간 30%에 육박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
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‘연
평균 물가상승률’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결 조치를 통
하여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
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, 제4조의2 신설).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“소득분배율”을 “소득분배율, 물가상승률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최저임금의 인상률 범위) 최저임금은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<u>소득분배율</u>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 ① ----- ----- -----<u>소득분배율, 물</u> <u>가상승률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조의2(최저임금의 인상률 범위) 최저임금은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